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72
----------	-------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이종욱 · 임이자 · 김도읍
안철수 · 김미애 · 안상훈
김상훈 · 박덕흠 · 배준영
이소희 · 최은석 · 권영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등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인화성·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나 폭발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화성·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화재나 폭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인화성·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인화성·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u>
6. ~ 10. (생 략) ② ~ ⑥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